

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정지의 세부기준 (제2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.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의 동기, 위반의 정도,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위반횟수별 처분기준		
		1회	2회	3회 이상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및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44조 제1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4조 제1항제2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지정 취소
다.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44조 제1항제3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지정 취소
라. 제45조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	법 제44조 제1항제4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 취소
마.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·조사·점검·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	법 제44조 제1항제5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 정지 6개월